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50302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원

담당변호사 권재갑

변 론 종 결 2022. 2. 8.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5. 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9,701,0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701,0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5. 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한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38176호로 C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8. ‘C는 원고에게 36,072,228원 및 그 중 15,917,932원에 대하여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9. 11.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C의 부친인 F이 2020. 5. 31. 사망하여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자녀들인 C, 피고, G, H에게 상속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0.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만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C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17. 접수 제331551호로 2020.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계양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부양하며 망인의 병원비, 장례식 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망인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특별하게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이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체결 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의 존부

C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이후인 2020. 8.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21. 2. 10.경의 시가는 약 112,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 명의로 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주식회사 D에 33,195,731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78,804,269원(= 112,000,000원 - 33,195,731원)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9,701,067원(= 78,804,269원 × 1/4,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배상 지급의무 발생일인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정원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계양구 I

[도로명주소]

인천 계양구 J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7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인천 계양구 I 대 281.6㎡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81.6분의 32.44 .끝.

